

의안 번호	제3687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상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으로 안정적 급수체계 유지
- 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편의성 증대
- 급수설비 관리책임 명확화로 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
- 경기도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- 가. 급수설비 관리책임 명확화 (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)
- 나.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조정 (안 제26조제1항 별표2 나목)
- 다. 경기도 조례 개정 사항 반영 (안 제48조제4항제2호)
- 라. 정수처분에 대한 유의사항 신설 (안 제50조제3항)
- 마.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